

yaml

---

(d) 임시 노령문제 특별위원회가 제87회 의회에서 상원 결의안 제33호에 따라 설립된 모든 기록 및 문서는 특별 위원회로 이전된다.

(e) (이행됨.)

### 83.2 인디언 문제 위원회

제105조. (a) (1) 상원의장은 다수당 지도자와 소수당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상원의 다수당 소속 의원 4명과 소수당 소속 의원 3명을 임명하여 임시 인디언 문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고 함)를 설립한다. 특별위원회는 위원들 중에서 의장을

(2)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퀘럼은 위원의 다수로 구성되며, 증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는 특별위원회가 더 적은 수를 퀘럼으로 설정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본 조항과 상원의 상설 위원회를 관리하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 규정을 채택할 수

(3) 특별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발생하는 공석은 잔여 위원들이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상원의 상설 규칙 제25조 제4항<sup>6</sup><sup>7</sup>의 목적에 있어서, 상원의원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은 고려되지 않는다.

(b) (1) 인디언 문제와 관련된 모든 제안된 입법안, 메시지, 청원서, 기념문서 및 기타 사항은 특별위원회로 회부된다.

(2) 특별위원회는 인디언의 문제와 기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는 인디언 땅 관리와 신뢰 책임, 인디언

<sup>6</sup> 1993년 2월 24일 S. Res. 71, 103-1에 따라 "인디언 문제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이 변경됨.

<sup>7</sup> 상원 규칙 제25조 제3(c)항의 번호 회원에 대한 내용은 상원 매뉴얼 25-3(c)항을 참조.

<sup>8</sup> 1979년 11월 14일 S. Res. 274, 96-1의 채택으로 "제6항"에서 변경됨.

| --- |

|| (d) 임시 노령문제 특별위원회가 제87회 의회에서 상원 결의안 제33호에 따라 설립된 모든 기록 및 문서는 특별 위원회로 이전된다. ||

|| (e) (이행됨.) ||

### || 83.2 인디언 문제 위원회 ||

|| 제105조. (a)(1) 상원의장은 다수당 지도자와 소수당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상원의 다수당 소속 의원 4명과 소수당 소속 의원 3명을 임명하여 임시 인디언 문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고 함)를 설립한다. 특별위원회는 위원들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

|| (2)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퀘럼은 위원의 다수로 구성되며, 증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는 특별위원회가 더 적은 수를 퀘럼으로 설정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본 조항과 상원의 상설 위원회를 관리하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

|| (3) 특별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발생하는 공석은 잔여 위원들이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4) 상원의 상설 규칙 제25조 제4항<sup>7</sup>의 목적에 있어서, 상원의원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은 고려되지 않는다. ||

|| (b)(1) 인디언 문제와 관련된 모든 제안된 입법안, 메시지, 청원서, 기념문서 및 기타 사항은 특별위원회로 회부된다. ||

|| (2) 특별위원회는 인디언의 문제와 기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는 인디언 땅 관리와 신뢰 책임, 인디언 ||

|| <sup>6</sup> 1993년 2월 24일 S. Res. 71, 103-1에 따라 "인디언 문제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이 변경됨. ||

|| <sup>7</sup> 상원 규칙 제25조 제3(c)항의 번호 회원에 대한 내용은 상원 매뉴얼 25-3(c)항을 참조. ||

|| <sup>8</sup> 1979년 11월 14일 S. Res. 274, 96-1의 채택으로 "제6항"에서 변경됨. ||